경제혁신 3개년 계획 "경제에 활력을 비전에 희망을 미래에 답하겠습니다."
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2015년 5월 28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FTA무역규범과 이경식 과장(044-203-5820) / 윤영범 사무관(5824)

자유무역협정(FTA)에서의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운영 방안 협의

- 제2회 FTA 원산지 간담회 개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5. 27.(수) 서울 코트라 회의실에서 「**자유무역협정(이하 FTA) 개성공단 간담회**(제2회 FTA 원산지 간담회)」를 열었다.

* 제1회 FTA 원산지 간담회는 4.24(금) 개최

○ 이번 간담회는 그간 체결한 FTA에서의 **개성공단 협상 결과**를 바탕으로 **앞으로** 진행할 FTA 협상에서의 **개성공단 관련 협상방향**을 **논의**하기 위해 열렸다.

○ 간담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**김학도 통상교섭실장, 개성공단기업협회 신한용 부회장**, 유관기관 관계자,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FTA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의견을 나누었다.

< 간담회 개요 >

◈ 일시/장소: '15.5.27(수) 16:30~18:00, 서울 코트라 회의실(10층)

◈ 참석: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(주재), FTA교섭관,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,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, 통일부·유관기관 전문가 등 20여명

□ 한국-싱가포르 FTA 이후 **우리나라가 체결한 14개의 FTA에 모두 개성공단 관련 조항**(역외가공조항)이 **포함**되어 있다.

○ **역외가공조항**을 통해 FTA 체약국인 한국에서 반출된 물자를 개성공단에서 가공하여 다시 한국에서 수출한 경우, 소정의 요건에 부합하면 한국산으로서의 **원산지지위**를 **인정**받을 수 있다.

* 가공형태: ① 한국에서 재료·반제품 반출 → ② 개성공단 내 임가공 → ③ 최종재 한국으로 재반입 → ④ 내수 또는 수출

< 우리 기체결 FTA 개성공단 조항 현황>

역외가공 방식	위원회 방식
FTA체결국의 재료·반제품을 역외가공지역에서 가공한 후 수출	FTA체결국간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사항 결정
싱가포르, EFTA, 아세안, 인도, 페루, 콜롬비아*, 베트남*, 중국*	EU, 미국, 터키, 호주, 캐나다, 뉴질랜드*

* '15.5월 현재 미발효 FTA

○ 특히 정식서명을 앞두고 있는 **한중FTA는 입주기업들과 긴밀히 협의를 바탕으로 중국과 협상을 한 결과**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**대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FTA활용 가능성**을 높인 것 평가하고 있다.

□ **김학도 실장**은 "한-칠레 FTA를 제외한 모든 우리 기(旣)체결 FTA에 개성공단 관련 조항을 포함한 것은 **최선의 협상결과**라고 평가하고 **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FTA를 활용하여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수출할 수 있기를** 희망한다."라고 말했다.

○ 간담회에 참석한 **개성공단기업협회 신한용 부회장**은 "FTA 협정에 개성공단 조항을 포함시키는 **정부의 정책을 지지**하며 앞으로 **FTA 협정에서도 개성공단 조항이 지속적으로 포함**되기를 희망한다."라고 말했다.

○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한중일 FTA,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 등 현재 진행중인 협상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.

[붙임] 참고. 한중FTA 개성공단 조항 협상 결과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FTA무역규범과 윤영범 사무관(☎ 044-203-582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| **한중FTA 개성공단 조항 협상 결과**

□ 개성공단에서의 역외가공을 인정하여 **협정 발효와 동시에** 개성공단 생산 품목에 대해 **특혜관세 혜택을 부여**하기로 합의

○ **현재 개성공단에서 생산중인 품목을 포함한 총 310개 품목(HS 코드 6단위 기준)**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기로 합의

* 한-EFTA : 267개, 한-인도 : 108개, 한-ASEAN, 페루, 콜롬비아 : 100개

○ 원산지지위 인정기준은 ①비원산지재료 가치가 수출가격(FOB, 수출항본선인도)의 40% 이하와 ②원산지재료 가치가 총재료가치의 60% 이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으로 설정

○ **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치**를 통해 추후 한·중 양국의 북한내 역외가공지역 추가 설치 가능성 확보

<개성공단 관련 주요 협상 결과>

구분	한-중 FTA	비교	기발효 FTA
원칙	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해 **발효 즉시 원산지 지위 인정** * 위원회는 추가 OPZ 지정에 한해서 운영	≥	▶ 한-미 FTA, 한-EU FTA 등 5개 FTA ⇒ **위원회를 통해 추후 결정** ▶ 한-아세안 FTA, 한-EFTA FTA 등 5개 FTA ⇒ **발효 즉시 원산지 지위 인정**
품목	**310개** (매년 합의에 따라 개정 가능)	>	▶ 한-EFTA FTA: **276개** ▶ 한-인도 FTA: **108개** ▶ 한-아세안, 페루 FTA: **100개** * 한-싱가포르(무관세 국가) FTA는 비교 무의미
요건	$\frac{\text{비원산지재료 가치}}{\text{최종재 가격}} \leqq 40\%$	>	<한-아세안 FTA 기준> $\frac{\text{비원산지투입 가치}}{\text{최종재 가격}} \leqq 40\%$ * 비원산지투입 = 비원산지재료+**임금+수송비**
	$\frac{\text{원산지재료 가치}}{\text{총재료 가치}} \geqq 60\%$ * 원산지재료 = **한국産 또는 중국産**	=	$\frac{\text{원산지재료 가치}}{\text{총재료 가치}} \geqq 60\%$